

월동기 에너지 수급안정 및 소비절약대책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에너지 성수기인 월동기간중 민생용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을 위하여 '91월동기 에너지 수급안정 및 소비절약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난 9월 26일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금년 월동기('91.10-'92.3)중의 전체 에너지 수요는 전년동기 보다 5.9%P가 둔화되어 11.8% 증가한 60,932천 TOE로서 각에너지원별로는,

석유는 금년에도 수송용 및 난방용 유류소비의 증가와 석유화학용등 산업용의 대폭 증가로 전년대비 20.9%증가한 1,452천 B/D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편의성 추구로 가정용 유류보일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경유사용 유도로 등유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6.5% 증가에 그치고 경유 소비는 높은 증가율(22.3%)이 예상되며 또한 주로 아파트등의 집단공급에너지 및 산업용과 발전용 연료에 사용되는 B-C유는 전년대비 17.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와 같은 수요증가에 대비한 금년 월동기중 민생 유류 수급안정대책의 주요내용으로써 생산 및 비축능력 제고를 위하여 우선 국내정제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현재 추진중인 경인의 정제시설 100천 B/D 확장사업을 금년내 완공토록 독려하며, 비축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 9.8백만배럴 추가시설을

건설하여 총 72.9백만배럴의 저장시설에 평균 재고를 15일분 이상을 항상 유지토록 하고 아울러 대수요처와 소비자의 사전비축을 적극 유도하여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확보한 물량을 적기에 소비자에게 수송키 위하여 정유사 및 석유판매업체별로 수송수단을 확충(유조선 : 153척/248천톤→162척/469천톤, 유조차 : 1,570량/69천kl→1,663량/73천kl, 유조차 : 5,438대/57kl→5,993대/66천kl)하여 시·도 및 수송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지역별 소요 물량을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토록 하고,

석유유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 판매점에 대한 물량공급을 책임 분담토록 하고 판매점의 정량거래 및 배달서비스 체제를 정착토록 하는 한편 시·도 주관으로 연휴기간중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의 윤번제 휴무등 영업독려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소비자보호 및 홍보대책으로는 동자부, 시·도, 정유사 및 대리점별로 유류수급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여 일일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월동기간 중에는 동자부, 시·도 정유사 및 유통협회에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민원을 즉시 처리케 하며 석유수요 급증에 따른 품질저하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키로 하였다. 특히, 월동기간중 대

수요처 및 소비자에게 폭설등 예기치 않은 수급차질로 적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 한전은 10월말까지 저장시설 대비 최대재고를 확보케 하고
- 철도청, 군부대, 농협, 수협, 아파트등 대수요처는 10월말까지 저장시설에 최대 재고를 보유케 하며,
- 일반 소비자는 최소한 20ℓ 용기 3통 규모의 등
 - 경유를 사전비축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력은 금년월동기의 최대수요가 18,029천KW으로 전년도 보다 10.9% 증가하나 전력 성수기인 '92년 하계 전력수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수요가 낮은 월동기중 발전기의 최대한 보수수요로 공급능력이 낮아져 예비율이 적정수준인 15%보다 낮은 7-9%수준으로 전망되어 이 기간중 대용량 발전소의 불시 정지시 일시적으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주요대책으로서, 발전설비 보수계획의 합리적조정 및 보수절차로 전력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소 보수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발전소 불시정지시 신속한 복구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점검을 강화하고, 전력수요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기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며, 발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월동기간중 한전의 B-C유 재고수준을 4일분 증대 시키기로 하였다.

무연탄의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7.4%감소한

12,953천톤으로 전망되며, 이중연탄용은 타연료로의 대체 및 가구당 연탄사용량 감소추세에 따라 전년보다 8.4% 감소한 11,902천톤으로 전망되어 전체 물량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최근 연탄수송차량 및 판매업소의 감소로 가정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연간 연탄수요의 27.7%에 해당하는 4,800천톤의 저탄을 유지토록 하고 농어촌지역 가정의 연탄저탄을 위한 하계 저탄사업으로 연탄 260백만개를 저탄토록 하여 이미 7월말 현재 각각 약65% 추진하였으며, 산탄지에 위치하여 월동기중 수송이 곤란한 석탄비축장비축탄을 조기방출토록 하여 지난8월 현재 105천톤을 방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부비축탄을 월동기중에 집중 방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에너지과소비 부문을 억제함으로써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의 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에너지성수기인 월동기에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보완하여 일부 규제정책을 법제화 하는 등 절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도를 조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자체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료로 에너지관리진단을 실시하는 등 산업부문에 있어서 에너지효율 증대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 신 간 □

1991년판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

- 동력자원부 -

정부는 지난 9월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앞으로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완화하고 오는 94년부터는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적재용량 3kl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등·경유를 실소비자(차량판매제외)에게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우선 허가대상인 주유소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보아 농협부관점등 일반판매소로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석유판매업 허가시 시·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최소한의 거리제한만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같은 제한은 2년후에는 완전 폐지토록 함(안 제9조 및 부칙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근 거	시·도지사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부칙		
- 거리기준	서	울 : 700m이상	서	울 : 350m이내	
	직할시 및 시읍	: 1km 이상	직할시 및 시읍	: 500m이내	
	기 타 지 역	: 2km 이상	기 타 지 역	: 1km 이내	
	※ 시행령시행일로부터 2년후 폐지				

-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석유소비구조의 경질화, 저유황화 추세에 대처키 위하여 중질유분해·탈황시설 원료용 B-C유에 대하여 석유사업기금을 환급할 방침이었으나 정유회사간의 불균형 문제등을 고려하여 신규시설이 완공되는 '92년 상반기중에 기금환급여부를 재검토하고, 유가자유화에 따른 가격구조개선을 통하여 동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함. (안 제15조의 3)
-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임.

'92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

국무회의는 지난 9월 26일자로 동력 자원부가 제출한 총규모 5,663억원의 '1992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1991. 1. 14.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석유사업기금이 민간기금에서 정부기금으로 전환되어 금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92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은 내년도 신규징수액을 556억원, 기용자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1,849억원, 그리고 기용자액 회수분 3,258억원으로 총 5,663억원을 조성하여 에너지부문사업에 5,463억원을 사용하고 국내유가완충을 위한 석유수입손실보전에 200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에너지부문 사업내용을 보면 석유비축에 1,073억원,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에 716억원, 국내외자원개발에 619억원, 도시가스사업에 556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716억원 석탄사업 지원에 943억

원, 그리고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기술개발 등 기타사업에 670억원을 계상 하고 있다.

금번 '92년도 운용계획의 특징은 석유비축사업, 장거리송유관건설 및 국내외자원개발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과 신도시지역난방사업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도시가스사업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수급안정기반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 사업에 총 기금운용규모의 80% 수준인 4,52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내년도 석탄가격안정등을 위한 석탄 산업지에 943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92년도 연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동자부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기능을 가능한한 축소하고, 에너지관련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기금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동력자원부 당국자는 발표했다.

'92년도 석유사업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 원)

		금 액	비 고
조 성	○ 前年移越	-	
	○ 신규징수	556	기금 0.2\$/B 징수 전제
	○ 운용수익	1,849	
	○ 용자회수	3,258	
	計	5,663	
운 용	○ 에너지事業	5,463	
	- 석유비축	1,073	· 비축시설 건설, 관리 및 비축유 구입
	- 장거리 송유관건설	716	· 출자 207, 용자 509
	- 국내외자원개발	619	· 국내대륙봉개발 37, 해외유전개발 389, 해외자원개발 193
	- 도시가스사업	556	· LNG 공급기반구축 452, 공급자배관망 61, 가스냉방 43
	- 에너지이용합리화	1,086	· 집단에너지 906, 절약시설조치 180
	- 석유개발공사운영	183	· 석유개발공사 운영비 보조등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05	· 대체에너지 이용촉진 100, 크린에너지토피아지원 5
	- 에너지 기술개발	113	·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에너지연구센터등에 지원
	- 석탄산업지원	943	· 산재보험료지원 361, 광원자녀학자금지원 38 폐광대책비 241, 무연탄저탄사업 253, 석탄광개발 50
- 원유도입선 다변화	60	· 美州, 아프리카에서 導入되는 原油에 대한 수송비 차액보조	
- 석유품질관리	9	· 석유품질검사소의 시설확충지원	
○ 국내유가완충	200		
- 석유수입손실보전	200	· '90. 8. - '91. 3 결프사태시 석유수입손실 미처리 잔액중 일부보전	
	計	5,663	